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
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제도를 운영중인 바, 국내 수소산업의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이 높아, 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역량있는 수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함

3. 주요내용

가. 수소전문기업의 지정 기준(안 제2조의 제1항 개정)

- 1) 수소산업은 현재 초기 시장형성 단계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해 벤처 등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보다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음
- 2)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인 총 매출액 기준을 현행 2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고, 총 매출액 20~50억원 미만 구간의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을 현행 50%에서 40%로 조정하고자함
- 3)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다수의 역량있는 수소기업이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 중 “50억원”을 “20억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20억원 이상 50억원”을 “10억원 이상 20억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수소전문기업의 범위) ①		제2조(수소전문기업의 범위) ① -		
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”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(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중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(이하 “수소사업”이라 한다)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.		-----		

1. ~ 3. (생략)	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4. 총매출액이 <u>50억원</u>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40 이상		4. ----- <u>20억원</u> -----		
5. 총매출액이 <u>20억원</u> 이상 <u>50억원</u>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50 이상		5. ----- <u>10억원 이상 20억원</u> -----		
② · ③ (생략)	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	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3974